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개정

그 동안 전문건설업계와 일반건설업계가 많은 논란을 벌여오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어 곧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당해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국회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를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시행규칙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은 1건 공사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을, 1건 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았다.

특히, 국회는 전문건설업계와 일반건설업계가 침해하게 대립양상을 보였던 의무하도급제 폐지 시기를 당초 2007년 1월로 한 정부안보다 오히려 1년 연장시켜 2008년 1월로 했으며, 전문건설업자의 소규모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또 국회는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도입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토록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구축되는 건설산업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위장직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마련 등을 권고하고,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6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p> <p>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p> <p>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p> <p>①~④(생략)</p> <p>⑤<신설></p>	<p>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p> <p>①~④(현행과 같음)</p> <p>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p> <p>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p>제30조(공사 일부의 하도급 등)</p> <p>①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 중 건설교통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삭제〉</p>
<p>〈신설〉</p>	<p>제85조의 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p> <p>①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p> <p>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p>